

## 변론 사건내용 홈페이지 게시

[2022헌라1]

### ○ 사건개요

- 청구인 경상남도 남해군은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경상남도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선으로 인식하고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다.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○○풍력 주식회사는 청구인 소속 구들여와 피청구인 소속 욕지도 사이의 해역(이하 ‘이 사건 쟁송해역’이라 한다) 등에 대하여 2021. 7. 23.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, 피청구인은 2021. 9. 28. 청구인과 협의 없이 ○○풍력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후 2021. 10. 13. 위 내용을 고시하였다.
-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쟁송해역 중 구들여 우측의 일부가 청구인의 관할임이 분명하므로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. 12. 1. 거절하였고, ○○풍력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1. 12. 30. 공유수면 점용·사용기간을 2022. 1. 31.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.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.

### ○ 심판대상

-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해상경계가 무엇인지, 또한 별지도면 표시가, 나 지점을 연결한 선(보라색 실선) 좌측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.

[별지도면]



※ 위 내용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, 종국 결정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